

# 대륙붕자료의 제출의무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정갑용 / 수산어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차례>

- I. 서 언
- II. 대륙붕의 개념
- III. 대륙붕한계위원회
- IV. 대륙붕자료의 제출의무
- V. 대응방안

## I. 서 언

대륙붕은 연안국의 육지영토에 연이은 해저 지형으로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공간이다. 세계 각국은 대륙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자국의 연안에 있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왔는데, 1945년에 미국이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선언하면서부터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주장과 탐사 및 개발이 본격화되었다.<sup>1)</sup>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일반조약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sup>2)</sup>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

약'이라 함)을 통해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됨으로써 정착되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에 대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각국이 주장하는 여러 기준을 대부분 수용, 규정하고 있으므로<sup>3)</sup> 대륙붕의 외측한계설정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대륙붕 외측한계설정의 곤란을 극복

1) Re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Longman Group UK Limited, 1992, p.768.

2) 1958년의 대륙붕협약에서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200미터 수심기준과 개발가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Ian Brownlie,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0, p.221.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기준은 육지의 자연연장기준과 거리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자 그 제2부속서에 대륙붕한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각국이 제출하는 대륙붕 외측한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맡기고 있다.

특히 2001년에 개최된 제11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이하 ‘당사국회의’라 함)에서는 대륙붕자료의 제출기간을 1999년 5월 13일부터 10년(2009년 5월 13일) 이내로 개정하였는데,<sup>4)</sup> 그 개정 이유는 미리 기준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대륙붕에 대한 탐사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동해에서는 북한, 일본, 러시아와, 황해에서는 북한 및 중국과, 남해에서는 일본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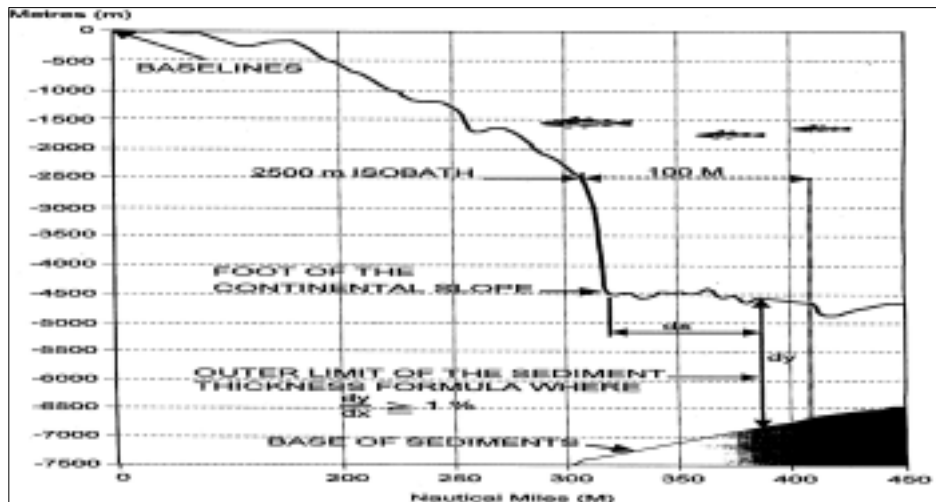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륙붕의 개념

### 1. 대륙붕의 의의

대륙붕은 영해를 넘어서 육지토괴의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접속된 대륙변계 외측한계까지의 해저와 하층토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한다(<그림-1> 참조).<sup>5)</sup> 대륙붕이란 용어는 원래 지질학상의 개

<그림-1> 대륙붕의 개념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19

중국과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대륙붕자료의 제출의무와 관련된 국제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

4) SPLOS/72(2001. 5. 29).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5)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한국해양연구소, 「국제연합해양법협약」, 1991, p.111 참조.

념으로서 영국학자 밀(Hgh Robert Mill)이 처음 사용한 것이 해양법에 도입된 것인데,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개념은 지질학상의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를 포함하는 대륙변곡까지로 확장되었다.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타국은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대륙붕을 이용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구체적인 권리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권(수중의 어족자원은 제외), 인공도 및 시설의 설치, 안전수역설정권(500미터),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권 및 해양과학조사권을 들 수 있다. 한편 대륙붕에 대하여 제3국은 상부수역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부설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양법협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된 것이지, 일방적 선언 또는 점유 등에 의해 취득된 것은 아니므로 시원적(始原的) 권리라는 점에서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구별된다.

## 2. 대륙붕의 외측한계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하여 최대폭 350해리의 선 또는 2,500미터의 등심선부터 100해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대륙토괴의 자연연장이라는 기준과 거리기준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국은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sup>6)</sup>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대륙변곡의 외연까지

$$\frac{\text{퇴적암두께}}{\text{고정점에서 대륙사면단까지의 거리}} \geq \frac{1}{100}$$

되는 고정점

-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
- 위의 조건 하에 그 고정선은 350해리 이내
- 또는 2,500m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선
- 이들 고정선은 그 1개의 길이가 60해리를 초과할 수 없음.

이 중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기준은 주로 아랍국가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며, 등수심 2,500m 기준은 방대한 대륙붕을 가진 구소련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고, 350해리 기준은 아일랜드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sup>7)</sup>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해양법협약 부속서II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연안국의 합법적인 대륙붕의 외측한계로 인정된다.

6) 동 제76조 제1항~제9항.

7) 박춘호,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994.12, p.220.

### III. 대륙붕한계위원회

#### 1. 기능 및 회기

위원회의 기능은, 연안국의 기선(基線)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사국회의에 권고<sup>8)</sup>하는 것과 연안국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본부를 미국 뉴욕에 두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 개최되고 소위원회 및 하부기구의 회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1997년에 설립된 이래 모두 11차의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표-1> 참조).

<표-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의경과

회기	내용	회의 일시	장소	회의 내용
제1회기		1997. 6. 16 - 20	뉴욕	□대륙붕한계위원회 설립, 위원선출 □위원회 의사절차규칙 제정
제2회기		1997. 11. 2 - 12	뉴욕	□의사절차규칙의 개정 □과학, 기술지침 논의
제3회기		1998. 5. 4 - 15	뉴욕	□과학, 기술지침에 관한 편집작업반 설치
제4회기		1998. 8. 31 - 9. 4	뉴욕	□과학, 기술지침 초안 작성
제5회기		1999. 5. 3 - 14	뉴욕	□과학, 기술지침 최종초안 작성, 배포
제6회기		1999. 8. 30 - 9. 3	뉴욕	□과학, 기술지침 최종초안 검토
제7회기		2000. 5. 1 - 5	뉴욕	□개도국의 대륙붕자료 작성관련 정책 및 법적 자문가 지명 논의
제8회기		2000. 8. 28 - 9. 1	뉴욕	□대륙붕자료 작성관련 훈련계획 논의
제9회기		2001. 5. 21 - 25	뉴욕	□대륙붕자료 작성관련 훈련계획 논의 □소위원회의 의사절차 논의
제10회기		2002. 3. 25 - 4. 12	뉴욕	□러시아의 대륙붕자료 검토 □러시아 자료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제11회기		2002. 6. 24 - 28	뉴욕	□제2기 신임위원회 업무개시 □소위원회의 러시아자료 검토결과 보고

자료 :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purpose.htm](http://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purpose.htm), p.3.

8) [www.un.org/Depts/los/clcs](http://www.un.org/Depts/los/clcs) 참조.

## 2. 구성 및 조직

### 1) 구성

위원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부속서 II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조직된 당사국회의의 하부 기관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공평한 지리적 대표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정식으로 설치되었다.<sup>9)</sup>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당사국회의에서 2/3이상 당사국이 출석하고 출석한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공평한 지리적 배분으로 선출한다.'<sup>10)</sup>

2002년 4월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당사국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제2차 임기의 위원들은 2002년 6월 16일부터 직무를 개시하였다.<sup>11)</sup> 2003년 4월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표-2>와 같다.

<표-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2003년 4월)

위 원	국 적	위 원	국 적
Al-Azri	오만	Juračić, Mladen	크로아티아
Albuquerque	브라질	Kazmin, Yuri Borisovitch	러시아
Astiz, Osvado Perdo	아르헨티나	Lu, Wenzheng	중국
Awosika, Lawrence Folajimi	나이지리아	Park, Yong-Ahn	대한민국
Betah, Samuel Sona	카메룬	Pimentel, Fernando Manuel Maia	포르투갈
Brekke, Harald	노르웨이	Symonds, Philip Alexander	호주
Carrera Hurtad, Galo	멕시코	Tamaki, Kensaku	일본
Croker, Peter F.	아일랜드	Thakur, Naresh Kumer	인도
Fagoonee, Indurlall	모리타니	Woeledji, Yao Ubuŋnalŋ	토고
Francis, Noel Newton St. Claver	자마이카	Jaafar, Abu Bakar	말레이시아
German, Mihai Silviu	루마니아		

자료 :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http://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 p.1.

또는 수리학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해양법협약의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설립키로 하여 1996년 5월 16일까지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위원회의 설치를 10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1997년 5월에

9) SPLOS/64(2001. 5. 1), p.14.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10) Annex II.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이하에서는 Annex II라 약칭) Article 2, Para.1. 구체적인 지리적 배분은 제12차 해양법당사국회의에서 아시아 5명, 아프리카 4명, 서구 4명, 동구 4명, 미주 및 카리브 4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1)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http://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 p.1.

## 2) 조직

위원회의 기구로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및 하부기구에서 채택하는 의사절차규칙 등을 검토하는 Editorial Committee와 대륙붕 자료의 설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인 Training Committee가 있고, 연안국이 대륙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시기구인 하부위원회(Subcommission)가 있다.<sup>12)</sup>

위원회는 위원 21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데, 협약의 이행을 위한 회의를 매년 1차례 이상 당사국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sup>13)</sup>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sup>14)</sup>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대륙붕자료의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대륙붕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위원은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으나, 투표권 없이 검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sup>15)</sup>

## 3. 의사결정 등 기타

각 위원은 위원회 등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투표방법은 거수에 의하되, 원칙적으로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소진된 경우에 본질문제에 대하여는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그 밖의 문제에 대하여는 출석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sup>16)</sup>

위원의 국적국가는 위원회의 경비를 부담하며,<sup>17)</sup> 위원회 및 하부기구의 공용어는 영어, 불

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아랍어 등 6개 언어이다.<sup>18)</sup>

## IV. 대륙붕자료의 제출의무

### 1. 자료제출 의무

연안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양법협약 및 제2부속서, 위원회의 절차규칙 및 동 부속서에 근거하고 있다.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형평한 지리적 대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위원회는 대륙붕의 외측한계 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그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행한 대륙붕의 한계는 확정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sup>19)</sup>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외측의 자국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 연안

12) Annex II, Article 1 및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in CLCS/3/Rev.3) 참조.

13) 위원회 절차규칙 제2조 및 제19조.

14) 동 제41조 제1항.

15) 동 제41조 제2항.

16) 동 제35조 내지 제38조 참조.

17) 동 제9조.

18) 동 제24조.

19)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국은 그 한계의 상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 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연안국은 동시에 과학적 및 기술적 조연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sup>20)</sup>

마주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절차규칙 제1부속서에 의하여 대륙붕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 대륙붕은 원래 연안국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시원적 권리이므로,<sup>21)</sup>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나 권고 등은 해당 연안국과 관련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22)</sup>

## 2. 자료제출 기한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에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기한은 해양법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이다.<sup>23)</sup> 그러나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인 장애 때문에 '협약의 발효 후 10년 내'라는 제출기한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재검토하였다.<sup>24)</sup> 제11차 당사국회의에서 세이셸의 제안으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sup>25)</sup>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검토하였다.

소위원회의 작업 결과, 1999년 5월 13일 이전

에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1999년 5월 13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내로 하고,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제출기한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sup>26)</sup> 이처럼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의 기산점을 1999년 5월 13일로 한 것은 위원회가 1997년 6월에 비로소 설립되었다는 점과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과학 및 기술지침이 1999년 5월 13일에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마주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국가,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국가가 대륙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제2부속서 제4조에 의거한 10년의 제출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늦추어질 수 있다.<sup>27)</sup>

## 3. 자료제출 지침

1999년 5월의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당사

20) 동 협약 부속서 제4조.

21)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larendon Press, Oxford, 1982, pp.482 ~ 484.

22)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45조.

23)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II, 제4조.

24)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1. in SPLOS/60. in www.un.org/Depts/los.

25) SPLOS/66. in www.un.org/Depts/los.

26)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El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 in SPLOS/72. in www.un.org/Depts/los.

27)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2부속서 제3조.

국들이 대륙붕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과학 및 기술지침<sup>28)</sup>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륙붕자료의 준비 및 제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수리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대륙사면 외측경계 및 대륙대의 외측경계 등 6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경계 획선에 관한 도상연습을 행한다. 다른 하나는 총괄, 대륙붕 외측한계의 권원 및 획선, 대륙붕 외측한계설정에 관한 측지학적 방법, 2,500m 등수심, 최대경사도를 적용한 대륙사면부, 관련증거를 적용한 대륙사면부, 해양대, 퇴적층의 두께에 의한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선, 대륙붕 외측한계와 관련된 정보, 상세설명 및 자료목록, 국제기구의 목록,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절차에 관한 도식, 도표 및 그림, 기타 관리 등 1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협의하여 채택한다.<sup>29)</sup>

위와 같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침에 의한 대륙붕한계의 설정방법을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2>와 같다.

<그림-2>의 상단그림의 상부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며 상부실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다. 상단그림의 하부점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며 하부실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표시한 것인데, 상단그림 전체의 실선은 두 조건을 조합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나타내는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2>의 중단그림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 또는 2,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의 고정점으로 획선된 선을 조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단그림의 상부점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 상부실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나타낸 선이며, 중단 하부점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고 하부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을 나타낸 것으로, 중단그림의 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과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조합한 것이다.

<그림-2>의 하단그림은 위 상단그림과 중단그림을 조합한 것이다. 하단그림에서 상부의 왼쪽 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상부의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고, 하단그림 상부의 오른쪽 점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상부의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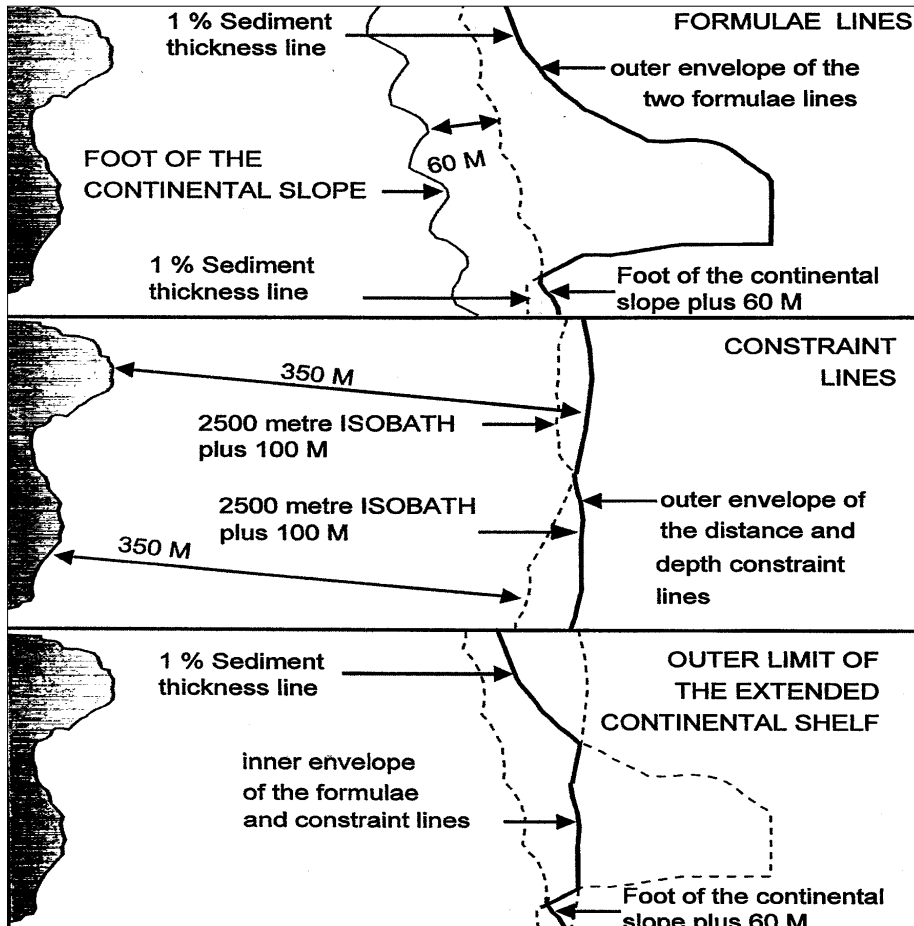
하단그림에서 중간부분의 외쪽 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중간부분 오른쪽 점선은 상부의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28)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29)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p.3~4.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그림-2>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정방법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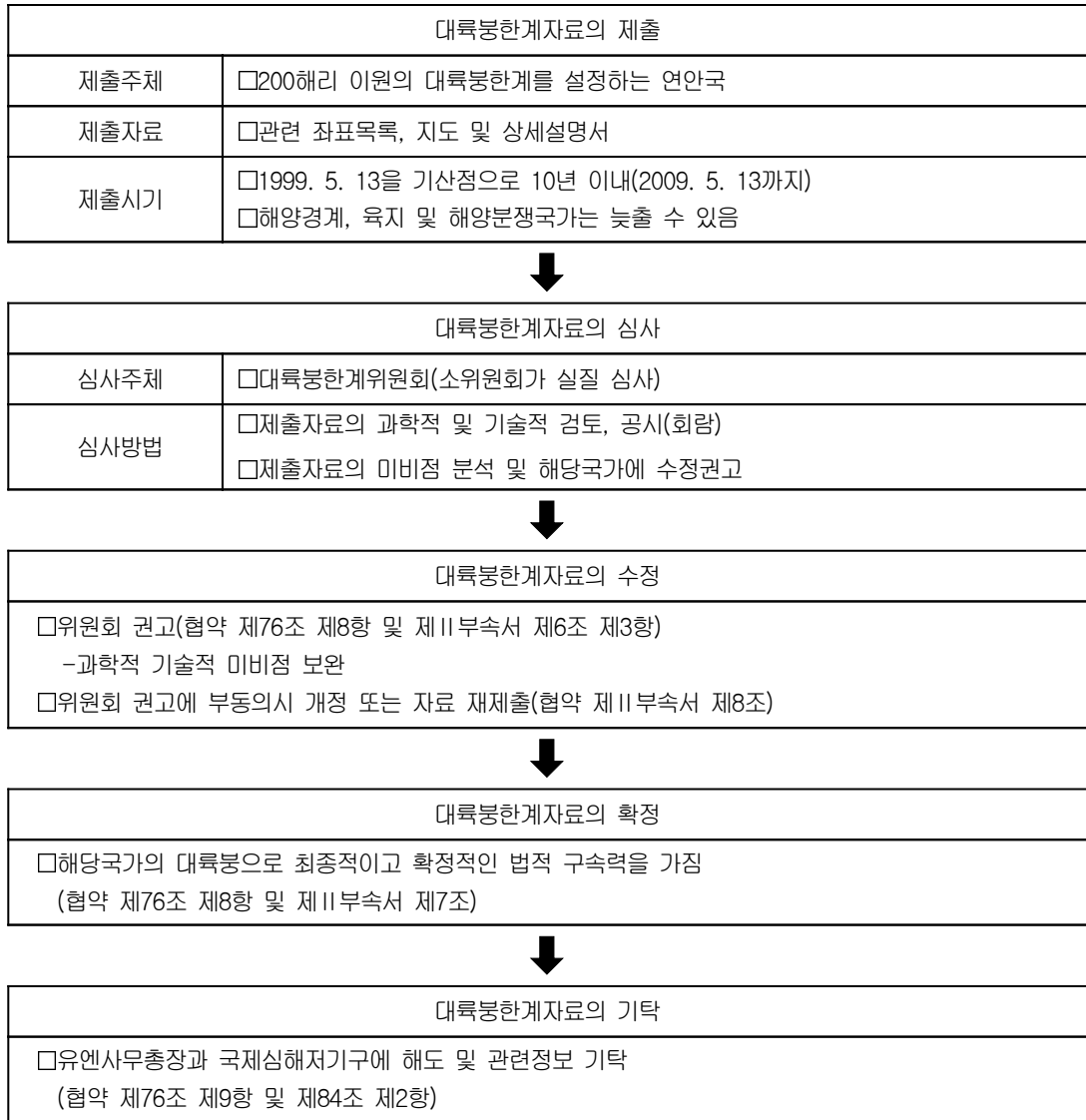
것으로 2,500미터 등수심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단그림에서 하부의 외쪽 점선은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해양법협약 부속서 II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연안국의 합법적인 대륙붕의 외측한계로 인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륙붕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3〉 대륙붕한계자료의 제출 및 심사절차



## V. 대응방안

이상에서 대륙붕 한계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

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륙붕 한계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와 주변국의 제출여부에 따른 국가이익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은 동해, 남해 및 황해상에서 양국 간의 거리가 200해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양경계확정을 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여부, 관련국의 동향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륙붕 한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제출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 간에 주장이 중복되는 동중국해의 Tri-Junction 부근에 석유나 가스의 매장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륙붕 한계자료의 제출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칫 먼저 제출하는 국가가 자료의 누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하여 자료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 학제 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동해,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해양퇴적층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에 대한 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해양법 일반에 대한 국제동향을 적시에 분석,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투입하고 연구조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칭 ‘국가대륙붕위원회’를 시급히 설치, 운영하여 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함으로써 대륙붕 외측한계 제출의무와 관련한 우리의 국

가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춘호,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 UN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994. 12.
2. 한국해양연구소, 「국제연합해양법협약」, 1991.
3. Bwownlie, Ian,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in Press, Oxford, 1990.
4.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5. Jennings, Rebert and Watts, Arthur,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Longman Group UK Limited, 1992.
6.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El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SPLOS/72*,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7. \_\_\_\_\_,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in *SPLOS/60*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8. \_\_\_\_\_, *SPLOS/64*,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9. \_\_\_\_\_, *SPLOS/66*,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10. O'Connel, D. P., *The Internationam Law of the Sea*, Clarendin Press, Oxford, 1982.
11.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CLCS/3/Rev.3

12.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in [www.un.org/Depts/los](http://www.un.org/Depts/los).
13. [www.un.org/Depts/los/dcs-new/commission\\_members.htm](http://www.un.org/Depts/los/dcs-new/commission_members.htm).